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 비공개성 · 차별성 여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선진기술 및 선진기법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거래가 빈번해졌다.

이렇게 선진기술이나 기법 등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술도입대가의 지급과 원천징수 등 세무상의 처리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기술도입 등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구분이 어려워 실무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어떻게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사용료소득(Know-how대가)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도입을 문서나 서류만이 아닌 기술자가 파견되어 전수시키기 때문인데, 이렇게 기술자를 통해 기술도입을 하는 경우 기술에 초점을 맞춰 사용료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기술의 비공개성인데,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이 know-how, 즉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know-how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기술이 그 직업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면 된다.

또한 용역제공 과정에서 권리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transfer) 여부로 판단이 가능한데, know-how(사용료소득)는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기술·제조방법·판매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undivulged technical information)로서 상대방에게 노하우가 제공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노하우 제공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의무가 없고 그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도 없다는 특징이 있다(재국조46017-5, 2003. 1. 16).

반면에 인적용역 제공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에 있지 않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고,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많은 활동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하며, 용역의 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증(warranty)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구분	사용료 소득	인적용역소득
① 개념	· 무형의 가치	·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② 원천지기준	· 사용지국 또는 지급지국	· 수행지국
③ 소득성격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서비스에 대한 대가
④ 제공자의 책임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⑤ 대가지급 방법	·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⑥ 설계용역대가의 경우	·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⑦ 기타 기술용역	· 특허권 등이나 know-how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⑧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 아니며 금액이 큼
⑨ 기계장치의 도입에 따른 설치, 제작, 조립운전을 위한 부수적인도면		·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